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

의 안 번 호	1716
------------	------

2020년 9월 8일  
교 통 위 원 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자 : 이광호 의원 외 14명

나. 제안일자 : 2020년 8월 11일

다. 회부일자 : 2020년 8월 21일

라. 상정일자

- 제296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교통위원회(2020년 9월 8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이광호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장은 「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행규칙」을 비롯한 관련 법령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도록 동 조례에 명시하고 있음

다만, 현행 서울시 공영차고지 31개소 중 20개 차고지가 건설이 아닌 매입하여 운영하고 있어, 동 조례에서 규정하는 공영차고지를 “설치”하는 조항과 해석상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

따라서, “설치”를 “설치·매입” 개정하여 서울시 운영현황을 조례에 반영하고 공영차고지 정의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“설치”를 “설치·매입”으로 변경함(안 제2조, 제3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## 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0.8.26.~2020.9.2.
- 의견없음

## 라.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: 원안가결<sup>1)</sup>

- 서울시 공영차고지는 도시계획 변경, 보상, 공사 등을 통해 직접 건설하여 사용하는 “건설차고지”와 민간 운송사업자가 사용하던 민간 차고지를 서울시가 매입하여 사용하는 “매입차고지”로 구분 가능
- 공영차고지 정의에서 “설치”를 “설치·매입”으로 변경하여 건설차고지와 매입 차고지 모두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이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함

---

1) 주차계획과-10385(2020.8.21.)

## 4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공영차고지의 정의를 시장이 “설치”하는 차고지로 한정함에 따라 자칫 서울시가 운영하는 매입 공영차고지를 포함하는 않는 것으로 오해 될 수 있어, 이를 “설치·매입”으로 수정함으로써 서울시 운영 실태를 반영하고 해석상 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

### ※ 참고 : 「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」 내용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공영차고지”란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 제72조제1호에 따른 공영차고지, 「택시운송사업자의 발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및 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공영차고지로서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.

### 나. 검토의견

- 공영차고지는 경영난으로 차고지 확보가 곤란한 버스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하여 심야시간대에 주택가 주차에 따른 주차무질서 및 민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조성·운영하는 시설로 서울시는 현재까지 29개소의 공영차고지<sup>2)</sup>를 관리·운영하고 있으며

2) 서울시 자료 : 총 31개소 (건설11, 매입 18, 매입 후 타용도 2)

133개 업체 4,318대가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음(별첨 참조)

- 다만, 현행 조례 제2조에 정의된 “공영차고지”는 시장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“설치”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로 규정되어 있고

현재 서울시가 운영 중인 29개 공영차고지 중 18개소는 서울시가 건설한 차고지가 아닌 부지를 매입하여 차고지로서 운영하고 있어, 매입차고지의 경우 “설치” 차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

- 따라서, 동 개정조례안에 따라 공영차고지를 “설치”에서 “설치·매입”으로 수정하는 것은 현행 서울시 공영차고지 운영 실정을 반영하고 조례 해석의 논란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할 것임

## 별첨

# 공영차고지 현황('20.8월24일)

- 총 개소 : 31개소(건설 11, 매입 18, 매입후 타용도 2)
- 시설공단 위탁 30개소(건설 11, 매입 18, 매입후 공단 미위탁 1(망원), 타용도 1(방화))
- 공영차고지(용도) 입주현황

구분	연번	구별	명칭	위치	규모(m)	박차대수				기타세부	입주업체 수
						계(소계)	시내	마을	기타		
차고지 입주·운영 29개소					447,961	4,318 (4,010)	3,490	520	308	공항 194 시티 14 전세 15, 택시 85	133
건설 11	소 계				378,308	3,264 (3,056)	2,627	429	208		99
	1	강동	강동	강일동 565-4	34,326	267	224	43	0		7
	2	강서	강서	개화동 663	56,493	391	209	71	111	공항 105, 시티 6	14
	3	관악	난곡	신림동 678-2	3,514	49	29	20	0		6
	4	도봉	도봉	도봉동 341-1	30,294	195	150	45	0		6
	5	마포	상암	상암동 1666	11,044	91	91	0	0		2
	6	송파	송파	장지동 579	56,233	492	432	60	0		14
	7	송파	장지	장지동 862	25,330	336	247	0	89	공항리무진 89	4
	8	양천	양천	신정동 1312	47,450	385	306	79	0		14
	9	은평	은평	수색동 414-1	46,399	465	356	101	8	시티투어 8	17
	10	은평	진관	진관동 36	16,529	179	179	0	0		5
	11	중랑	중랑	신내동 63	50,696	414	404	10	0		10
매입 18	소 계				69,653	1054 (954)	863	91	100		34
	12	금천	가산	가산동 29-6	3,289	52	52	0	0		1
	13	도봉	도봉	도봉동 282-30	5,496	104	104	0	0		2
	14	금천	독산	독산동 1001	1,281	33	5	28	0		1
	15	중랑	면목	면목동 391-1	3,176	51	51	0	0		1
	16	영등포	문래	문래동 5가 8-1	3,047	49	49	0	0		1
	17	금천	시흥1	시흥동 980-1	1,325	54	54	0	0		2
	18	금천	시흥2	시흥동 262-4	2,302	33	33	0	0		1
	19	관악	신림2	신림동 241-4	3,725	52	52	0	0		1
	20	관악	신림3	신림동 131-6	4,211	60	60	0	0		2
	21	서초	염곡1	염곡동 300	4,698	53	53	0	0		2
	22	서초	염곡2	염곡동 300-2	9,371	90	76	14	0		3
	23	구로	운수	운수동 58	7,382	83	34	49	0		6
	24	강북	우이	우이동 6-1	4,035	60	60	0	0		1
	25	동대문	장안	장안동 319-1	792	85	0	0	85	택시 85	1
	26	성북	정릉	정릉동 771-7	3,600	50	50	0	0		2
	27	용산	용산	한강로3가 40-1051	3,791	23	8	0	15	전세버스 15	2
	28	광명	소하	소하동 1054-6	2,908	55	55	0	0		3
29	구리	수택	수택동 884	5,224	67	67	0	0		2	

### ○ 매입 후 차고지 외 타용도

매입 2	연번	구별	명칭	위치	규모(m <sup>2</sup> )	비 고
	계					3,334
1	마포	망원	망원동 478-10	658	공단위탁 아님, 주차장(마포시설관리공단 운영)	
2	강서	방화	방화동168-50	2,676	공단위탁, 미사용, 임대주택 검토 중	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6. 토론요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설치”를 “설치·매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설치”를 “설치·매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설치”를 “설치·매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

